

<p>제2019-184호 2019년 10월 2일(수)</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9-293호 전남 여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234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9
- 여수시 공고 제2019-235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전라좌수영 동헌 ~ 여수공고 도로확장) 12
- 여수시 공고 제2019-2383호 도로 지정 공고[호명동 이운*] 15
- 여수시 공고 제2019-2388호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재입찰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19-2396호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54
- 여수시 공고 제2019-2397호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59
- 여수시 공고 제2019-2400호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63
- 여수시 공고 제2019-2403호 여수시 리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9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에서 의결된 「전남어촌 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여 수 시 장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의 시·군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와 같이 전라남도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로 구성하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

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2.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3. 관련 공공단체의 장

4.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5.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자문위원은 필요 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종료 전에도 협의회 의결에 의해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처리한다.

1. 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3. 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분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FTA 극복방안, 미세 먼지 대응방안, 기후변화 대응방안, WTO후속조치,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농·수·축 특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및 개선, 어업 경영안정, 어업 경쟁력 강화,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육아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5. 어촌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노하우 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6. 어촌·어업·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의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 ⑤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및 실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의결과 준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는 결정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분야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협의안건의 별지 서식 실무검토의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회비 및 분담금)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와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회비 납부는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①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수입·지출 내역은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21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잔액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보칙) 이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전라남도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지 역	지 자 체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군자동 43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463)사업
 - 나. 명 칭: 전라좌수영 동헌~여수공고 도로확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643m²
 - 나. 규 모: L=81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2019.10(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람기간: 2019.10. 2. ~ 2019.10.16.(14일간)
8.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군자	416	도	252	15	여수시	여수시청				
2	군자	444-2	대	4	4	곽**	4**				
3	군자	444-1	대	50	35	곽**	4**				
4	군자	444	대	13	8	곽**	4**				
5	군자	441	대	122	59	(주)여수 개발	여수시 고소3길 ***(고소동)	국	여수세무서	압류	
								김**	여수시 소호7길 ** ,10*동 70*호	근저당	
6	군자	440	대	169	22	김**	동정 1184				
7	군자	439	대	73	41	김**	여수시 동산1길 13-1(군자동)	박**	여수시 서교1길 **	근저당	
8	군자	438	수	264	256	여수시	여수시청				
9	군자	437-2	대	258	75	이**	여수시 둔덕4길 46-**(둔덕동)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10	군자	435	도	442	1	여수시	여수시청				
11	군자	437-11	도	2	2	여수시	여수시청				
12	군자	437-1	도	99	8	조**	43*-*				
13	동산	493	대	28	17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 21*동 150*호 (개포동, **아파트)				
14	동산	492	대	20	2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 21*동 150*호 (개포동, **아파트)				
15	동산	494	대	17	1	한**				미등기	
16	동산	495	대	251	1	홍**	여수시 여서로 13*, 10*동 40*호(여서동, **건설아파트)				
17	동산	498	수	245	96	여수시	여수시청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군자동	444-2	창고	시멘트,벽돌	1.5㎡	곽**	여수시 군자동 4**				
			마당		4.0㎡						
			대문	철재	1개소						
			담장	블록	9.2㎡						
2	군자동	444-1	가옥	스레트,블록	39.2㎡	곽**	여수시 군자동 4**				
			마당		15.0㎡						
			대문	철재	1개소						
			담장	블록	31.2㎡						
			물탱크		1개소						
3	군자동	440	화장실	스레트,블록	12.0㎡	김**	동정 11**				
			대문	철재	1개소						
			물탱크		1개소						
			마당		12.0㎡						
			담장	블록	12.8㎡						
4	군자동	439	주택	시멘트,벽돌	79.0㎡	김**	여수시 동산1길 1*~*(군자동)	박**	여수시 서교1길 **	근저당	
			화장실	슬래브	4.5㎡						
			대문	철재	1개소						
			동백나무	H=1.0m	2주						
			동백나무	H=1.0m	2주						
			사철나무	H=1.0m	1주						
			마당		6.0㎡						
담장	블록	7.6㎡									
5	군자동	437-2	창고	스레트,블록	5.0㎡	이**	여수시 둔덕7길 46-**(둔덕동)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2가)	근저당	
			대문,서터	철재	1개소,1개소						
			마당	콘크리트	16.0㎡						
			담장	블록	22.3㎡						
			무화과나무	10년	2주						
			매실	10년,3년	2주						
사과나무	4년	1주									
6	동산동	495	대문	목조	1개소	홍**	여수시 둔덕7길 46-**(둔덕동)				
			창고	기와,블록	9.4㎡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 2.

여 수 시 장 (인)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10. .~2022.12.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여수 도시계획시설 (도로: 전라좌수영 동헌 ~ 여수공고 도로확장)	전남 여수시 군자동 438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643㎡ - 규모: L=81m, B=8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전라좌수영 동헌 ~ 여수공고 도로확장	여수시 도로과	2019.10.2. ~ 2019.10.16.(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19.10.2. ~ 10.16.(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사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군자	416	도	252	15	여수시	여수시청				
2	군자	444-2	대	4	4	곽**	4**				
3	군자	444-1	대	50	35	곽**	4**				
4	군자	444	대	13	8	곽**	4**				
5	군자	441	대	122	59	(주)여수 개발	여수시 고소3길 ***(고소동)	국	여수세무서	압류	
								김**	여수시 소호7길 ** ,10*동 70*호	근저당	
6	군자	440	대	169	22	김**	동정 118*				
7	군자	439	대	73	41	김**	여수시 동산1길 1*-(군자동)	박**	여수시 서교1길 **	근저당	
8	군자	438	수	264	256	여수시	여수시청				
9	군자	437-2	대	258	75	이**	여수시 둔덕4길 46***(둔덕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10	군자	435	도	442	1	여수시	여수시청				
11	군자	437-11	도	2	2	여수시	여수시청				
12	군자	437-1	도	99	8	조**	43*-*				
13	동산	493	대	28	17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 21*동 150*호 (개포동, **아파트)				
14	동산	492	대	20	2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 21*동 150*호 (개포동, **아파트)				
15	동산	494	대	17	1	한**				미등기	
16	동산	495	대	251	1	홍**	여수시 여서로 13*, 10*동 40*호(여서동, **건설아파트)				
17	동산	498	수	245	96	여수시	여수시청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군자동	444-2	창고	시멘트,벽돌	1.5㎡	곽**	여수시 군자동 4**				
			마당		4.0㎡						
			대문	철재	1개소						
			담장	블록	9.2㎡						
2	군자동	444-1	가옥	스레트,블록	39.2㎡	곽**	여수시 군자동 4**				
			마당		15.0㎡						
			대문	철재	1개소						
			담장	블록	31.2㎡						
3	군자동	440	화장실	스레트,블록	12.0㎡	김**	동정 11**				
			대문	철재	1개소						
			물탱크		1개소						
			마당		12.0㎡						
4	군자동	439	주택	시멘트,벽돌	79.0㎡	김**	여수시 동산1길 1*~*(군자동)	박**	여수시 서교1길 **	근저당	
			화장실	슬래브	4.5㎡						
			대문	철재	1개소						
			동백나무	H=1.0m	2주						
			동백나무	H=1.0m	2주						
			사철나무	H=1.0m	1주						
			마당		6.0㎡						
담장	블록	7.6㎡									
5	군자동	437-2	창고	스레트,블록	5.0㎡	이**	여수시 둔덕7길 46-**(둔덕동)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2가)	근저당	
			대문,셔터	철재	1개소,1개소						
			마당	콘크리트	16.0㎡						
			담장	블록	22.3㎡						
			무화과나무	10년	2주						
			매실	10년,3년	2주						
사과나무	4년	1주									
6	동산동	495	대문	목조	1개소	홍**	여수시 여서로 13*, 10*동 40*호(여서동, **건설아파트)				
			창고	기와,블록	9.4㎡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호명동 산153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호명동 산153	107	7	893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호명동 1618-9	68	7	683		
호명동 1618-11	30	6	188		
호명동 1618-13	5	6	36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2.

여 수 시 장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재입찰공고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에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홍보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창조를 위해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을 아래와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 나.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다. 용역내용 : 다중이용공간(폐철도 공원 지역)에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적인 작품을 소개, 홍보(제안요청서 참조)
- 라. 기초금액 : 금9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의 일반사항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다.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업체 포함) 등에서 창작예술작품 관련 또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30,000천원 이상의 누적 실적(계약)이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작가(기획자) 또는 업체
 - 1-1) 예술작품 구상·구현이 가능하며 공공미술, 조각, 설치, 디지털아트 등 미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작가(기획자)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1-2) 예술작품을 제작·설치·관리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조형물]를 소지한 업체

2) 공동수급 불가

3)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www.g2b.go.kr)을 필해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19. 10. 15.(화) (1일간)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 또는 작가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지참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48호, 2018.11.8)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에 의거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장소 : 2019. 10. 18.(금) 10:00 여수시청 상황실(2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제안설명 : PT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며, 비공개 원칙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시 규정에 따릅니다.
- 사.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36)로 문의

2019. 10. 2.

여 수 시 장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 제안요청서 -**

2019. 10.



여수시
(문화예술과)

제안요청서(안)

I

사업개요

1. 사업명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2.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 대상지 : 미평역~해양레일바이크(6.707km)
4. 주요 사업내용
 - 다중이용공간(폐철도 공원지역)에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적인 작품을 설치·홍보
 - ※ 분야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도예, 서예, 디자인, 사진 등
5. 사업금액 : 금99,100천원(일금구천구백일십만원정)
 - ※ 작품(모형포함)제작, 설치, 부가세 등 모두 포함금액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계약시에는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II

입찰 및 계약 방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업체 포함) 등에서 창작예술작품 관련 또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30,000천원 이상의 누적 실적(계약)이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작가(기획자) 또는 업체

1-1) 예술작품 구상·구현이 가능하며 공공미술, 조각, 설치, 디지털아트 등 미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작가(기획자) 또는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1-2) 예술작품을 제작·설치·관리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형물]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www.g2b.go.kr)을 필해야 함

3. 협상자 선정 및 순서

○ 제안서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

○ 평가배점(안)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안)을 기준으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4. 협상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 누락된 부분, 보완 필요성 부분 등이 있을 시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5.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결과공개는 평가결과 관련예규에 의거하여 공개

6. 제안서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A4, 단면인쇄, 좌철, 무선제본), 백상지 30페이지 이내(설계도면 5페이지 이내)] / USB 1매

· 원본 표지는 제안자를 표시하되 사본 표지는 익명 처리할 것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원본 표지 제외) 등 어느 곳이든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함

- 기타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함

○ 제출일자 : 입찰공고문에 따름

7. 과업추진 일정

○ 정기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추진일정, 작품배치, 디자인 등 보고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시 현안 및 과업 진행사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

※ 여수시-용역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반영

○ 협상시 가격 및 세부계획 조정을 통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협의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9. 기타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계약체결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 최종 선정자는 협상 성립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최종 선정자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내용, 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최종예산안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선정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III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 요청 사항

- 지역의 역사와 환경,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스토리텔링 도출 및 도출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예술작품으로 전체 작품 안에서 일관된 컨셉 및 스토리라인이 존재하여야 함
-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작품임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공감(이해) 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 구상
- 인터랙티브(상호작용성)적인 요소, 기능, 해석 등을 바탕으로 작품과 관람객과의 공감, 소통이 가능한 예술작품
- 작품은 지역작가* 작품이어야 하며 최소 10점 이상 참여
 - ※ 지역작가 :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분야*에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작가
 - ※ 해당 분야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도예, 서예, 사진, 디자인 등
- 제안 작품의 재질, 규격, 재료, 제품명(제품설명서 포함), 등 기재하여야 함
- 작품의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작품설치 제안장소는 유동인구 및 휴식공간 등의 장점이 많은 공간임을 유념하고 자연경관,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야외 공공장소에 작품이 전시되는 특성상 작품 보호 및 훼손작품 교체를 위해 별도의 시건 및 안전장치를 감안한 작품 형식 및 구조를 도출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규격
 - 용지 규격 및 인쇄방식 : A4 백상지, 단면인쇄, 좌철, 무선제본, 30페이지 이내 (설계도면 5페이지 이내)
- 문서 작성 : 제안서는 ppt파일로 작성
- 사용 언어 : 한국어로 작성하되 전문용어는 주석으로 작성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 구분 표시,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 제안서는 별도의 USB로도 제출, 모든 제안 내용이 제안서 순서에 맞게 포함되어야 함

IV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 항목	작성 방법
I. 프로젝트 제안개요 1.프로젝트명 2.기획의도 3.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자 또는 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프로젝트명, 기획의도, 사업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작품계획 1.스토리텔링 구축 -공간 분석 및 시나리오 등 2.컨셉(작품개념) 및 아이디어 3.작품 연출(안) -작품 배치 및 구(성)현 방법 제시 -작품재료, 규격, 제품명 명시 -작품(안) 제시(예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장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간의 스토리텔링 구성 · 구간에 대한 유동인구, 주변 시설물, 등 공간 분석 · 작품을 구성하는 개념 및 중심 아이디어 제시(도식화) · 스토리텔링 및 표현형식·방법에 기반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작품 배치 및 구(성)현 방안 · 작품계획에 기반한 실제 설치를 예상할 수 있는 작품이미지 제시 및 설명
III. 추진방안 1. 추진체계 2.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성 있는 추진인력구성 조직도 및 참여구성원 기재 (서식5 : 구성도 첨부) · 추진일정(작업공정표) 및 사후관리 기재
IV.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은 제시한 사업비 99,100천원이내로 작성 ·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서식11 : 가격대비 항목비중 조사표 첨부)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처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특히 사업수행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 자료와 사업수행실적과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 ~ 할 수도 있다”, “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 증빙 등 기타자료, USB 등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른 경우 발주처가 결정함
- 제반 중요 문의 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구두, 전화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V

제안서 평가기준

1. 기본 평가 기준

- 본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제안서 평가에 적용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제안자 선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 적용일은 제안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함
- 평가는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7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제안서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를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 시
 - 제안서의 서명누락, 주요사항의 전후 불일치 등 제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요 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만을 평가함

3. 제안 전제조건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일정이 변경 및 지연될 경우 추가비용과 투입인력의 변동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감안하여 제안할 것
- 발주처에 제공한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평가배점(안)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비고
총계		100	
I. 기술 능력 평가 (90)	·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누적 사업수행실적	5	사전 평가 (계약부서 평가)
	· 공간 이해도 - 대상지에 대한 이해 - 작품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이용객 및 공공 장소를 고려한 안전성 및 접근성	15	평가위원 평가
	· 작품성 - 작품의 예술성, 독창성, 완성도 등 - 작품스토리의 우수성 및 창의성 - 구현 방법 및 형식의 우수성	15	
	· 전문성 - 작품 실현 가능성 - 추진 일정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15	
	· 지역 예술인 및 분야의 연계성 [지역작가 작품 참여도] - 지역작가 작품 20점 이상 : 25 - 지역작가 작품 15점 이상 : 20 - 지역작가 작품 10점 이상 : 15	25	
	· 지역 예술인 및 분야의 연계성 [예술분야 참여도] - 5개 분야 이상 : 15 - 3개 분야 이상 : 10 - 1개 분야 이상 : 5	15	
II. 가격 평가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내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사전 평가 (계약부서 평가)

○ I. 기술능력평가 - 수행경험(실적) : 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누적)	3천만원 초과	: 5점
		3천만원 이하	: 3점
			5

○ I.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공간이해도, 작품성, 전문성)

항목별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15점 만점 기준	15	10	7	3	1

※ 지역 예술인 및 분야의 연계성은 평가배점(안)에 의함

○ II.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frac{\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 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셋째자리 반올림)

붙임 서 식

1.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2.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6. 일반현황 및 연혁
7. 참여구성원 총괄표
8. 작가(개인) 경력서
9.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0. 가격제안서
11.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12. 사용인감계
13. 제안서 표지
14. 위임장

입찰보증금 납부 협약서

1. 사 업 명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 재무관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업체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상기 본인(정보주체)은 여수시가 추진하는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사업입찰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은 여수시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업체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입찰 건에 대한 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간
- 개인정보 이용 방법 : 입찰업체 대표자 확인 대조 및 향후 입찰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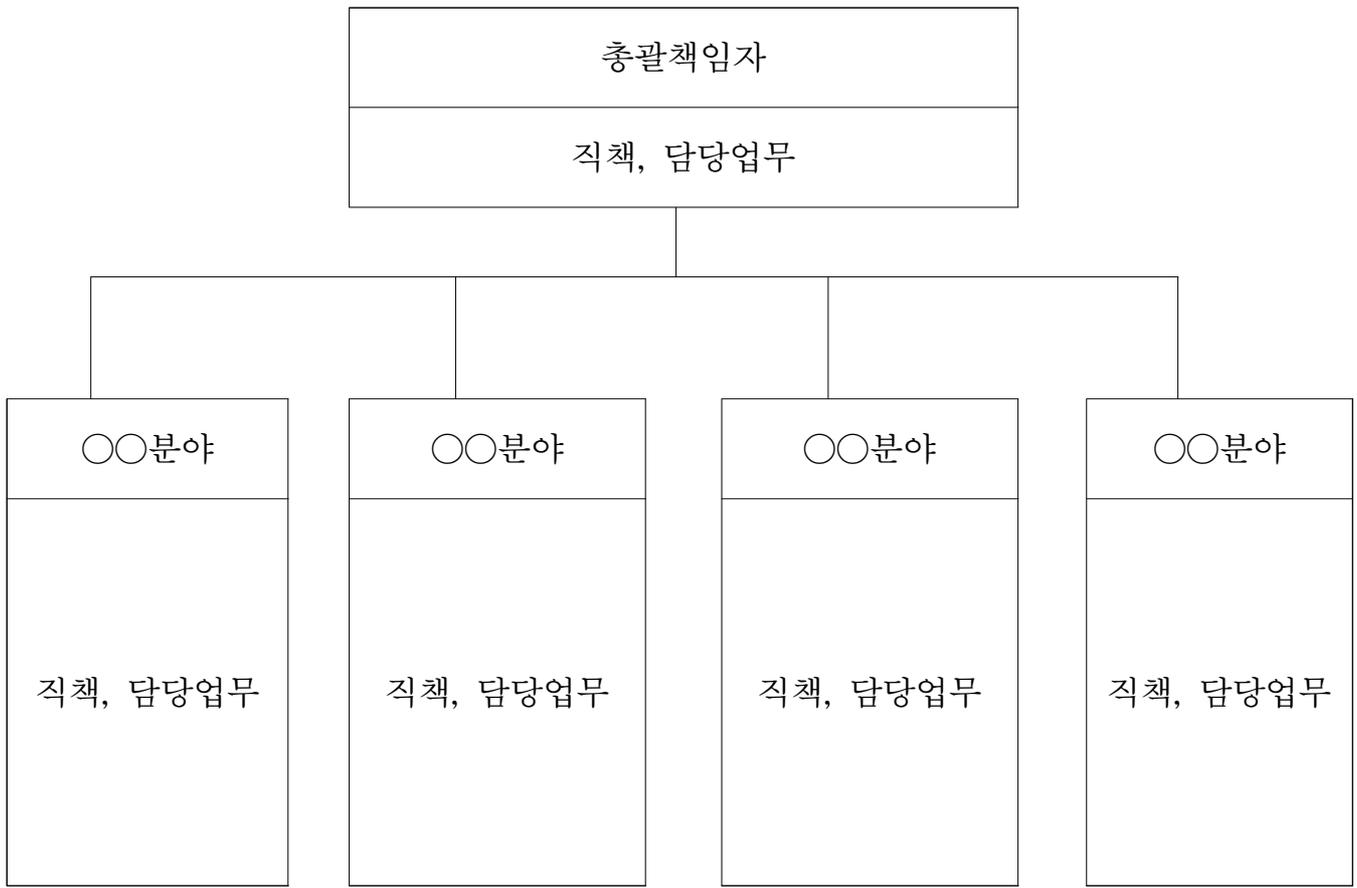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여수시 재무관 귀하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구성도)



연번	직책	담당업무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1					
2					
3					
4					
5					

작가(개인) 경력서

성 명	(한글)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	E-mail			
휴대전화			유선전화		
주 소	(-)				
소 속			직급(위)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필요한 경우 해당 칸을 늘려 작성 가능하나, 1인당 2page 이내로 기재

※ 학력과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사업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단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여수시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업의 종류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증빙자료(①계약서, ②세금계산서 또는 입금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구성비	비고
① 인건비	소 계			
	※ 산출기초 상세히 기재			
② 재료비	소 계			
③ 경비	소 계			
④ 합 계				①+②+③
⑤ 일반관리비				④의 5% 이내
⑥ 이 윤				(④+⑤)의 10% 이내
⑦ 부가가치세				(④+⑤+⑥)의 10%
⑧ 총 계				④+⑤+⑥+⑦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9.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 재무관 귀하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제안서

2019년 월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제안서

2019년 월 일

위임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p>『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사업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리인 : (인)</p> <p>여수시 재무관 귀하</p>				
<p>※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p> <p>※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p> <p>※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책임짐</p>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 과업지시서 -**

2019. 10.



여수시
(문화예술과)

과업지시서(안)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 용역
2.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3. 장 소 : 폐철도공원(미평역~해양레일바이크)
4. 사업비 : 99,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폐철도공원에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홍보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창조
6. 과업 내용
 - 다중이용공간(폐철도공원 지역)에 문화예술적인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설치·홍보
 - ※ 분야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도예, 서예, 디자인, 사진 등

II. 과업의 세부내용

1. 지역의 역사와 환경,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스토리텔링 도출 및 도출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예술작품으로 전체 작품 안에서 일관된 컨셉 및 스토리 라인이 존재하여야 함
2.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작품임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공감(이해)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 구상
3. 인터랙티브(상호작용성)적인 요소, 기능, 해석 등을 바탕으로 작품과 관람객과의 공감, 소통이 가능한 예술작품
4. 작품은 지역작가* 작품이어야 하며 최소 10점 이상 참여
 - ※ 지역작가 :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분야*에 작품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 ※ 해당분야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도예, 서예, 사진, 디자인 등
5. 제안 작품의 재질, 규격, 재료, 제품명(제품설명서 포함), 등 기재하여야 함

6. 작품의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7. 작품설치 제안장소는 유동인구 및 휴식공간 등의 장점이 많은 공간임을 유념하고 자연경관,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8. 야외 공공장소에 작품이 전시되는 특성상 작품 보호 및 훼손작품 교체를 위해 별도의 시건 및 안전장치를 감안한 작품 형식 및 구조를 도출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폐철도공원 지역예술인 작품 설치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계약법, 여수시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여수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 과업 참여자 명단, 과업추진 일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담인력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품 제작과 설치 등 제반사항 모두를 포함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마. 과업수행자는 여수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보안사항 등

- 계약체결 시 과업수행자는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발주처는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사업변경 및 중지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여수시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 여수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③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경우

카. 과업수행자의 책임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탁인은 민·형사상 손실 보상 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

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할 시나 필요 시 이에 응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에 회의록, 사업비 정산서 등 사업발생에 따른 필요 일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정산 시 증빙 미비, 사업 내용과 무관한 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 잔액 등은 환수 조치한다.

타.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과업 결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여수시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본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여수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여수시에게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여수시의 소유로 하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민·형

사상 책임 또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각종 보고서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기록하여야 한다.

IV.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보고
- 과업참여자 명단 및 책임자 선임계
- 용역 수행 예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 착수보고서 20부, PPT 파일

3. 용역 수행 성과물 및 저작권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유형적 결과물은 여수시에 있고 과업 수행완료 즉시 여수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와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여수시에 있다. 단,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다.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 사진·이미지 초상권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 있다.

공 고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취지

-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의 금고운영 및 특별지원사업의 융자사업 등이 폐지되고,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를 시행일부터 폐지함.
-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고 융자금 또는 특별지원 융자금을 대부받았으나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 제31조에 따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3. 규칙폐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 ~ 10. 23.(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 업무담당자 : 총무과 문경환(inuya8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고 용자금 또는 특별지원 용자금을 대부받았으나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 제31조에 따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공 고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취지

-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의 금고운영 및 특별지원사업의 용자사업 등이 폐지되고,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와 함께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일부터 폐지함.

3. 규칙폐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 ~ 10. 23.(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문경환(inuya8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제 호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우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를 명백하기 위한 규정이나 조례 목적 자체가 여름철 물놀이 예방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삭제(안 제3조)
- 상위법령 단순재기재 조항 삭제(안 제7조제4항)
- 조례 문구 정비 : 용어정리 및 문구 오류 수정(안 제2조 등 8개 조항)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 ~ 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38)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재난안전과) (59675)
- 업무담당자 : 재난안전과 양승재(ysjdd1004@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248

붙임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제3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관리 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상위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다만**, 안전관리요원 선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팀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의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전라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

을 시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여수소방서장,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여수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전대비계획 및 제19조의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 홍보계획의 홍보매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읍·면·동 마을 앰프방송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u>”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u>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u>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p> <p>2. (생략)</p> <p>3. “<u>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u>”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p> <p>4. “<u>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u>”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u>자</u>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u>자</u>를 말한다.</p> <p>5. ~ 6.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관리지역</u>”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u>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u>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u>위험구역</u>”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p> <p>4. “<u>안전관리요원</u>”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u>사람으로</u>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u>를 말한다.</p> <p>5. ~ 6.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단, 「해수욕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삭제)</p>
<p>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 ⑤ (생략)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u>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u>」을 따른다.</p>	<p>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u>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u>」을 따른다.</p>
<p>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u>질서위반행위법</u>」을 준용한다.</p>	<p>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p>
<p>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생략)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u>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u> 5. ~ 6. (생략)</p>	<p>제3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u>상위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u> 5. ~ 6. (현행과 같음)</p>
<p><u>제3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u>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 ③ (생략)</p>	<p>제3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삭제)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u>배치시기를</u> 조정할 수 있다.</p> <p>제15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u>아니하는</u>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격을 갖추어야</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u>자</u>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u>자</u> 	<p>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u>운영기간을</u> 조정할 수 있다.</p> <p>제1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u>않는</u>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u>사람으</u>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u>사람</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u>안전관리요원 대상</u>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단, 안전관리요원 선발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u>대응계획</u>(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u>안전관리요원</u>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다만, 안전관리요원 선발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u>대응계획</u>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공 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 신축 및 관문동 골드클래스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2개의 법정동(주삼동.삼일동)에 걸쳐 있는 삼동지구 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용지를 산업단지 지구단위 선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유												
(시전동) 3개동 21개반 신설	[시전동] ○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20동 477세대 입주('20. 2. 예정)에 따른 3개동 21개반 신설 ※ 8월 기준 시전동 인구/세대수 : 35,482명 / 12,976세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변경 전</th> <th colspan="2">변경 후</th> </tr> <tr> <th>통수</th> <th>반수</th> <th>통수</th> <th>반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3개 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78개 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66개 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99개 반</td> </tr> </tbody> </table>	변경 전		변경 후		통수	반수	통수	반수	63개 통	478개 반	66개 통	499개 반
변경 전		변경 후											
통수	반수	통수	반수										
63개 통	478개 반	66개 통	499개 반										

주요내용	사유												
(동문동) 2개통 10개반 신설	<p>[동문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문동 골드클래스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5동 286세대 입주(현재 입주 중 / '19. 8. 기준 입주율 18%)에 따른 2개통 10개반 신설 ※ 7월 기준 동문동 인구/세대수 : 4,041명 / 2,220세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변경 전</th> <th colspan="2">변경 후</th> </tr> <tr> <th>통수</th> <th>반수</th> <th>통수</th> <th>반수</th> </tr> </thead> <tbody> <tr> <td>15개 통</td> <td>130개 반</td> <td>17개 통</td> <td>140개 반</td> </tr> </tbody> </table>	변경 전		변경 후		통수	반수	통수	반수	15개 통	130개 반	17개 통	140개 반
변경 전		변경 후											
통수	반수	통수	반수										
15개 통	130개 반	17개 통	140개 반										
(주삼동.삼일동) 행정(관할)구역 경계 조정	<p>[주삼동.삼일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동지구 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용지가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산업단지 지구단위 선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월하동 1167번지 외 6필지가 주삼동 1057-3번지 외 6필지로 변경 * 삼일동 면적 축소(9,249.2m²) 												

※ 여수시 리통반 조정 현황

구분	현 행				증 감				개정안			
	법정리	행정리	통	반	법정리	행정리	통	반	법정리	행정리	통	반
총계	114	212	469	4,210			5	31	114	212	474	4,241
읍	10	44		171					10	44		171
면	53	168		670					53	168		670
동	51		469	3,369			5	31	51		474	3,400

3. 개정시행규칙안 : 붙임 1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 ~ 10. 2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이승민(ilby0583@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동문동 6통 4반과 7반, 7통 5반과 9반, 8통 1반과 4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문동 15통란 다음에 16통과 17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문동	6통	4	관문동 5~7, 8-5, 8-17, 8-18, 8-19, 8-20, 9, 112, 113, 113-1, 114, 115~117, 135~137
		7	관문동 92-1, 93~103, 189~220, 524~528
	7통	5	관문동 34-1, 34-2, 35, 55~57
		9	관문동 713~714, 715-1, 802~803, 805-1, 807~817
	8통	1	관문동 645~649, 701~704, 705-1, 706, 706-1, 706-4, 707~710, 711-1, 712
		4	관문동 611~616, 623~639, 641-8
	16통	1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1동) 102,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102, 1201, 1202, 1301, 1302
		2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1동) 203, 204, 303, 304, 403,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3, 804, 903, 904, 1003, 1004, 1103, 1104, 1203, 1204, 1303, 1304, 작은도서관
		3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2동)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102, 1201, 1202, 1301, 1302, 1401, 1402, 1501, 1502, 관리사무소
		4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2동) 104, 203, 204, 303, 304, 403,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3, 804, 903, 904, 1003, 1004, 1103, 1104, 1203, 1204, 1303, 1304, 1403, 1503, 경로당
		5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2동) 105, 106, 205, 206, 305, 306, 405, 406, 505, 506, 605, 606, 705, 706, 805, 806, 905, 906, 1005, 1006, 1105, 1106, 1205, 1206, 1305, 1306, 1405, 1505

동문동	17통	1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3동)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2, 1202, 1302, 1402, 1502, 휘트니스
		2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3동) 103, 104, 203, 204, 303, 304, 403,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3, 804, 903, 904, 1003, 1004, 1103, 1104, 1203, 1204, 1303, 1304, 1403, 1404, 1503, 1504, 1603, 1604, 1703, 1704, 1803, 1804
		3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3동) 105, 106, 205, 206, 305, 306, 405, 406, 505, 506, 605, 606, 705, 706, 805, 806, 905, 906, 1005, 1006, 1105, 1106, 1205, 1206, 1305, 1306, 1405, 1406, 1505, 1506, 1605, 1606, 1705, 1706, 1805, 1806
		4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4동) 102,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102, 1201, 1202, 1301, 1302
		5	관문동 1156, 관문동 골드클래스 아파트(105동)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501, 502, 503, 504, 601, 602, 603, 604, 701, 702, 703, 704, 801, 802, 803, 804, 901, 904

별표 2 중 시전동 63통란 다음에 64통부터 66통까지의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전동	64통	1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1동)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01, 402, 403, 404, 405
		2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2동)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3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3동)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4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4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5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5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6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6동)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01, 402, 403, 404, 405
		7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7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시전동	65통	1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1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2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2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3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3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4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4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5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5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6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6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66통	1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7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2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8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3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09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4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0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5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1동)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01, 402, 403, 404, 405
		6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2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7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3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8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 상가동

별표 2 중 주삼동 1통 6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삼동	1통	6	주삼동(삼동) 56~70-1, 102-1~105-7, 456-1, 466~469-1, 472~478, 533-1~539-4, 541~545-2, 553~556-2, 481~491-1, 513-1~520-4, 521-1~531, 532, 646, 648 1057-3, 1057-4, 1057-5, 1057-6, 1057-7, 1057-8, 1057-9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 2〕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문동	6통	4반	관문동 5~9, 112, 113, 113-1, 114, 115~117, 135~137	6통	4반		관문동 5~7, 8-5, 8-17, 8-18, 8-19, 8-20, 9, 112, 113, 113-1, 114, 115~117, 135~137
		7반	관문동 91~103, 189~220, 524~528			7반	관문동 92-1, 93~103, 189~220, 524~528
	7통	5반	관문동 33, 34, 35, 37, 55~64	7통	5반		관문동 34-1, 34-2, 35, 55~57
		9반	관문동 713~715, 802~817			9반	관문동 713~714, 715-1, 802~803, 805-1, 807~817
	8통	1반	관문동 645~649, 701~712	8통	1반		관문동 645~649, 701~704, 705-1, 706, 706-1, 706-4, 707~710, 711-1, 712
		4반	관문동 611~616, 623~645			4반	관문동 611~616, 623~639, 641-8

현 행	개 정 안			
<신설>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문동	16 통	1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1동) 102,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102, 1201, 1202, 1301, 1302
			2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1동) 203, 204, 303, 304, 403,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3, 804, 903, 904, 1003, 1004, 1103, 1104, 1203, 1204, 1303, 1304, 작은도서관
			3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2동)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102, 1201, 1202, 1301, 1302, 1401, 1402, 1501, 1502, 관리사무소
			4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2동) 104, 203, 204, 303, 304, 403,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3, 804, 903, 904, 1003, 1004, 1103, 1104, 1203, 1204, 1303, 1304, 1403, 1503, 경로당

현 행	개 정 안			
<신설>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16 통	5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2동) 105, 106, 205, 206, 305, 306, 405, 406, 505, 506, 605, 606, 705, 706, 805, 806, 905, 906, 1005, 1006, 1105, 1106, 1205, 1206, 1305, 1306, 1405, 1505
	동문동		1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3동)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2, 1202, 1302, 1402, 1502, 휘트니스
		17 통	2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3동) 103, 104, 203, 204, 303, 304, 403,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3, 804, 903, 904, 1003, 1004, 1103, 1104, 1203, 1204, 1303, 1304, 1403, 1404, 1503, 1504, 1603, 1604, 1703, 1704, 1803, 1804
		3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3동) 105, 106, 205, 206, 305, 306, 405, 406, 505, 506, 605, 606, 705, 706, 805, 806, 905, 906, 1005, 1006, 1105, 1106, 1205, 1206, 1305, 1306, 1405, 1406, 1505, 1506, 1605, 1606, 1705, 1706, 1805, 1806	

현 행	개 정 안			
<신설>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문동	17 통	4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4동) 102,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102, 1201, 1202, 1301, 1302, 관문동 8-9
		5반	관문동 1156, 골드클래스 아파트(105동)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501, 502, 503, 504, 601, 602, 603, 604, 701, 702, 703, 704, 801, 802, 803, 804, 901, 904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시전동	64 통	반 명	관할구역
			1반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1동)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01, 402, 403, 404, 405
			2반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2동)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3반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3동)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4반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4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5반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5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6반	웅천동 1867-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106동)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01, 402, 403, 404, 405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통 명	반 명	관할구역	
				사천동	64 통
	1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1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2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2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3반		웅천동 1866-1,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203 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4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4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현 행	개 정 안			
<신설>	동	통 명	반 명	관할구역
				사천동
	6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6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사천동	66 통	1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7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2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8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3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 그린 더 테라스(209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현 행	개 정 안						
<신설>	동	통 명	반 명	관할구역			
				사전동	66 통	4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0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5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1동)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01, 402, 403, 404, 405
						6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2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7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213동)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404, 405, 406
8반	웅천동 1866-1, 웅천꿈에그린 더 테라스 상기동						

현 행				개 정 안			
〔별표 2〕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 2〕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주삼동	6통	1반	주삼동(삼동) 56~70-1, 102-1~105-7, 456-1, 466~469-1, 472~478, 533-1~539-4, 541~545-2, 553~556-2, 481~491-1, 513-1~520-4, 521-1~531, 532, 646, 648	주삼동	6통	1반	주삼동(삼동) 56~70-1, 102-1~105-7, 456-1, 466~469-1, 472~478, 533-1~539-4, 541~545-2, 553~556-2, 481~491-1, 513-1~520-4, 521-1~531, 532, 646, 648 1057-3, 1057-4, 1057-5, 1057-6, 1057-7, 1057-8, 1057-9